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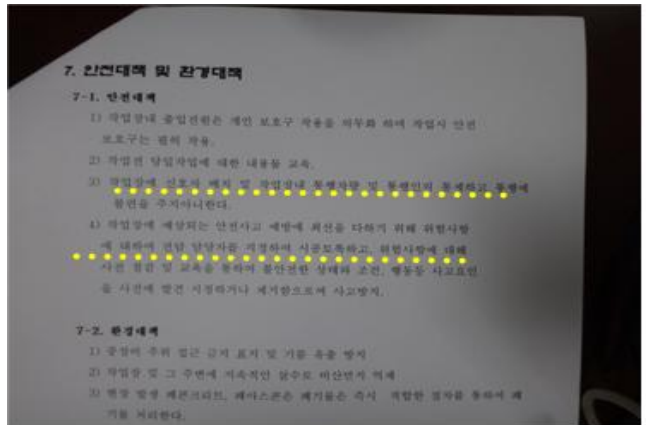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]

- 점검일시 : 2017.09.19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기성호, 박수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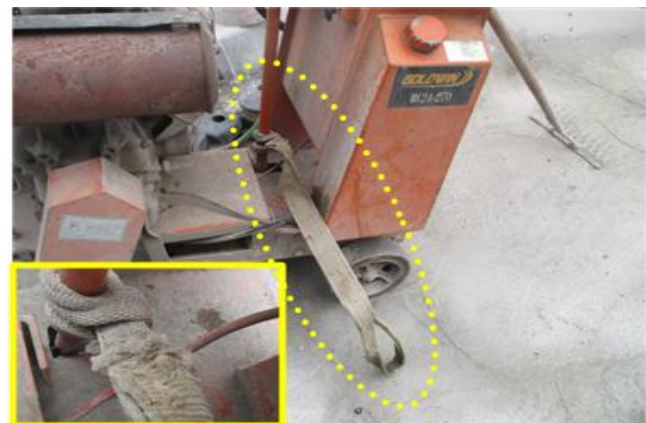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굴삭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가포장 작업시 건설 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개선조치 이행 요함
- ① 시공계획서에 따라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원과 건설기계와의 근접 작업시 협착위험 방지를 위한 충분한 사전 작업협의
- ② 건설기계 사용시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굴삭기의 작업안전을 위한 백알람, 경광등, 후방감시카메라 등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 요함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, 공통-032(굴삭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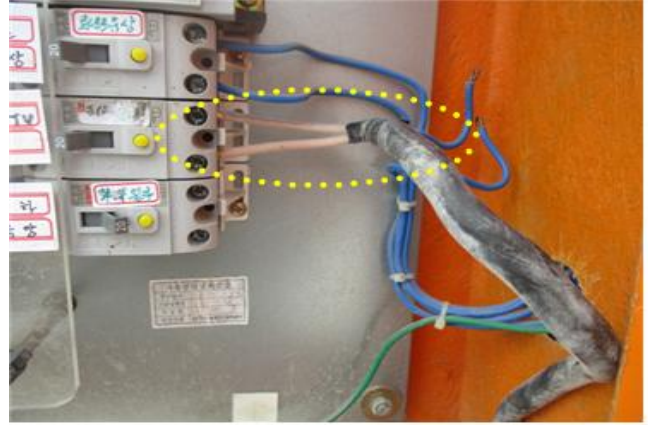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에 사용중인 아스팔트 절단기에 걸려있는 인양용 슬링벨트는 손상이 심하여 인양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교체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1(벨트슬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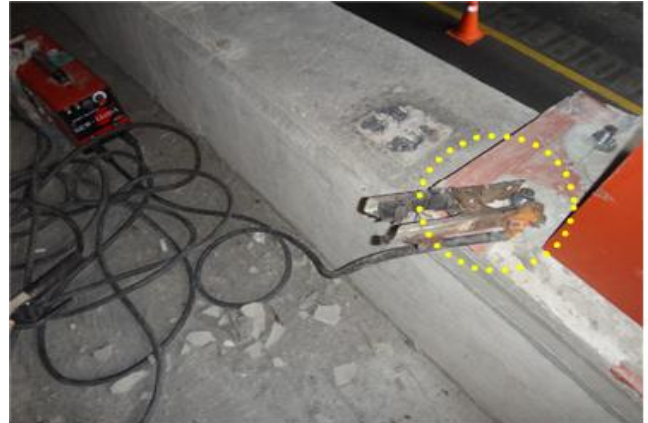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에서 설치된 가설전선 중 접지선이 단락된 전선은 확인 후 접지선 연결 후 사용하고, 근로자들이 가설전선 사용 시 접지선을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7(가설전선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작업 중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는 충분한 절연조치를 하여야 하는바, 방음벽 철골 지주설치 작업을 위한 용접 홀더 집계의 절연기능이 충분하도록 교체 요함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1(용접작업 및 용접기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3조(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에서 인화성물질(휘발유) 사용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관리하고, 해당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(소화설비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스통은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현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방음벽 공사구간에 비치된 핸드그라인더는 보호덮개 설치 후 사용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(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건설기계를 이용한 고소작업 중 흔들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, 터널 천정등 설치를 위한 경사면 고소작업대는 작업중 뜻밖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구름방지 고임목(뿔기)으로 고정 요함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6(고소작업대 시저형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아스팔트 프라이머로 인한 토양 또는 우수에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중 유출방지 조치(흡착포, 모래 등) 요함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4(위험물보관소)

